

의안 번호	제3580호
----------	--------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4월 9일 김포시장
- 나. 상 정 일 자 : 2025년 7월 23일
- 다. 의 결 일 자 : 2025년 7월 23일

2. 재의요구 이유

- 개정안 제2조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에서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 복지관 부속 체육관”에 대해 규정한 바 없으며, 개정안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체육시설의 종류를 “장애인체육시설”로 조례에서 임의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임.
- 개정안 제10조의2와 관련하여 개정안 제2조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없이 정의된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항으로 법률 위반으로 판단됨.
- 개정안 제10조의3과 관련하여 사용된 용어 ‘운영·지원’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제2항에서 ‘운영 또는 지원’과 ‘제공해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는바 상위법에 어긋남.
- 개정안 제10조의3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한 장애인 편의 제공 조항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임의로 일부만 발췌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 생략

4. 검토의견 : 생략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주문사항

-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존중하나 상위법과 조례가 충돌할 경우 상위법이 우선 적용이 되어야 하며, 관련 조례가 상위법과 배치가 되면 해당 조례는 무효가 되거나 효력이 정지될 수도 있기에 부결함.

11. 결과보고서 첨부서류 : 없음